

운 영 규 정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일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 당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복지용구 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 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판매 : 수급자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계약 시 일시불로 현금 지불하거나 3일내에 계좌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납부방 식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중 수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계좌입금을 원칙 으 로 한다.

등 급	1등급~5등급
년간 한도액 (원)	1,600,000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3. 월 중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변경된 자격기준에 대한 금액으 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를 하던 중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 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 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수급자 사망 시 혹은 응급 상황 시는 예외로 한다.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대여)
- (3)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⑦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요구 할 수 있다.

1.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 2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